

2000. 12. 23

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
조례개정조례안
-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- 충주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	12. 16	12. 16	12. 22	12. 22	산림녹지과
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지역경제과장
충주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"	상수도사업소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주민에게 각종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규제 조항을 폐지함.
- 공용, 공공용, 공익사업용으로 시유림을 이용시 요율을 100분의 5로 현실화함.

- 허가기간을 초과한 채광, 토석채취시 초과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규정함.
- 분수림설정과 취소에 관하여 산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.

나.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규제개혁 검토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인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함.

2) 주요골자

-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
→ 시장이나 수탁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시민 또는 단체로
- 공익상 필요 → 주관하는 각종행사
-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
→ 저촉되는 행위
-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→ 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다.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불합리하고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던 설계수수료를 공사전 공사비와 동시 납부

- 공사비 납기한을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공사신청 취소 유예
- “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”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적으로 구체화
- 취득자에게 체납요금 승계를 예외로 하여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 부과 한계를 정함
- 현실성이 없는 가압류 징수 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의 내용이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규제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도모
- 시유림의 사용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, 사용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의 포괄적인 조문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 및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과 기간내 공사비 선납, 가압류 징수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내용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
-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인 사항과 비현실적인 사항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시소유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시소유산림 이용시 이중규제 사항은?

○답변 : 계약의 해제 및 산림이용의 허가 등임.

▶ 질의 : 시소유 산림 대부료 적용 기준은?

○답변 :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임.

▶ 질의 : 시소유 산림 이용 감면 기준은?

○답변 : 공용, 공공용, 공의사업의 경우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나.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제9조 사용 범위를 변경하는 이유는?

○답변 : 공익상 포괄적인 의미를 시장이나, 수탁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시민 또는 단체로 규정함.

▶ 질의 :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의 개념은?

○답변 : 수탁자가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함.

다.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상수도 체납액은?

○답변 : 납기가 지난 것은 181,000천 원임.

▶ 질의 : 제35조 가압류 정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?

○답변 : 호암동 불우시설과 극동대 고지대에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음.

▶ 질의 : 제24조 체납요금 승계를 하지 않으면?

○답변 : 경매 또는 행불자등 전소유자 체납액 때문에 민원인과의 많은 분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승계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최대한 징수토록하고 어려울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 할 것임.

▶ 질의 : 결손처분전에 타지방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단수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?

○답변 :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 등으로 건의하겠음.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- 가. 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.